

장기요양요원의 소득 결정요인 분석에 대한 연구: 소득분위별 차이를 중심으로

김찬미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박사과정)¹⁾

<요 약>

본 연구는 장기요양요원의 소득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소득분위별로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을 위한 실증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분석에는 보건복지부가 조사하고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시스템에서 제공하는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연구방법론으로 분위회귀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요양보호사는 모든 소득 분위에서 타 직종 대비 낮은 소득 수준을 보였으며,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와 같은 재가급여 유형은 노인요양시설에 비해 특히 저소득 분위에서 불리한 소득 구조를 나타냈다. 또한 근무 지역별로는 농촌 지역이 대도시 및 중소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장기요양요원 노동시장이 직종, 급여 유형, 지역에 따라 구조적으로 이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일부 집단에 불리한 소득 구조가 집중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정책의 구체화 및 차등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장기요양요원, 요양보호사, 장기요양급여, 분위회귀모형, 장기요양실태조사

1) 주저자 및 교신저자(E-mail: monster1017@hanmail.net)

I. 서론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보편적 사회복지의 실현은 모든 사회구성원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국가 정책의 핵심적인 과제이다. 영양 개선, 의료기술 발전, 사회 안전망 강화 등으로 인해 개인의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한국 사회는 매우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가 고령층으로 본격 진입함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 서비스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에는 노인 돌봄이 가족 구성원의 책임으로 여겨졌으나, 핵가족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사회구조적 변화로 인해 전통적인 가족 중심의 돌봄 체계는 점차 약화되고 있다(박선숙, 2020).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정부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하여 노인의 일상 생활 지원과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사회적 책임으로 전환하였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25).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도입 이후 빠르게 성장하여, 장기요양 서비스 공급 확대와 재정 규모의 증가²⁾를 가져왔다. 그러나 서비스의 양적 측면의 성장과는 별개로 현장에서는 서비스 질 저하와 종사자 처우의 열악함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나영균, 정형선, 2019). 장기요양서비스는 돌봄 노동을 중심으로 한 인적 자원에 크게 의존하는 서비스로, 그 질은 현장에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인력의 역량과 근무환경에 의해 좌우된다(유병선 외, 2021). 이러한 현장 인력은 장기요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 수는 2020년 25,383개소에서 2024년 29,058개소로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장기요양급여비 지급건수는 약 1,057만 건에서 1,554만 건으로 급증하였으며, 장기요양급여 규모 또한 2020년 약 8조 원에서 2024년 약 14조 원으로 확대되었음(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양요원이라 불리며,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의 신체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며(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25), 제도의 서비스 품질을 결정짓는 핵심 인력이다. 그러나 장기요양요원의 다수는 낮은 임금과 과도한 업무 강도, 고용 불안정 등 열악한 노동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직무 만족도 저하와 높은 이직률은 인력 수급의 불안정성으로 이어지고 있다(이주재, 2011).

이 중에서도 소득 수준은 노동시장 참여와 직무 유지 및 서비스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다. 통계청의 2022년 일자리행정 통계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체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약 353만 원, 중위소득은 약 267만 원으로 집계되었다. 여기서 산업 대분류 기준으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 대해 살펴보면, 평균소득은 약 260만 원, 중위소득은 약 206만 원으로 전체 집단에 대비하여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특히 장기요양요원의 평균소득은 127만 원으로 파악되어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인다(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이러한 낮은 임금 수준은 이직률 증가와 서비스의 단절로 이어질 수 있으며(권현정, 홍경준, 2017; 최운정, 2022), 궁극적으로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장기요양요원의 소득은 수가 단가, 서비스 제공 시간 등 제도적 구조에 일정 부분 영향을 받지만, 동일한 제도적 조건 속에서도 고용형태, 경력, 교육참여 여부, 지역 등 다양한 요인이 실제 소득에 유의미한 차이를 유발하고 있다. 특히 하위 소득 분위에 집중된 구조나 계층화된 소득은 단순한 수가 체계만으로 설명이 어려우며, 실증적 분석을 통해 그 구조적 요인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존 국내 연구는 장기요양요원의 일반적 처우나 직무 만족도, 이직 의도 등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

8 사회복지정책과 실천

으며, 노동시장 내 소득 분포의 이질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장기요양요원의 소득은 단일한 평균값으로 설명하기 복잡한 구조를 가지며(박인아, 2018), 직종 간 차이도 명확하고, 동일 직종 내에서 근무시간, 기관 유형, 경력 등에 따라 다양한 분포를 보인다. 따라서 장기요양요원의 소득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노동시장의 계층적 특성과 구조적 맥락을 반영한 정교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장기요양요원의 소득결정요인을 소득 분위별로 분석함으로써, 장기요양 노동시장의 다층적 구조와 이질적 특성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하위 소득 분위에 집중되는 구조적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표적화된 처우 개선 정책의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장기요양노동시장은 직종, 기관유형, 근무경력 등에 따라 계층화되어 있으며, 소득 분포 또한 일정한 패턴이나 일관된 경향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분절적 특성을 보인다. 예컨대 상위 분위에서는 교육수준이나 자격 요건이 주요한 소득 결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하위 분위에서는 지역, 고용형태, 근무시간 유형 등 제도적 구조적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동일한 독립변수라 하더라도 소득 수준에 따라 그 영향력은 상이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평균 효과에 기반한 일반선형회귀모형을 활용해 왔으며, 이는 소득 분포 전반의 다양한 양상을 정책 설계에 반영하는 데 한계를 초래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분위회귀모형(quantile regression)을 적용하여 소득분위별로 독립변인이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실증분석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조

사하고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MDIS)에서 제공하는 2022년 장기요양실 태조사 장기요양요원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장기요양요원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3장에서는 연구방법론을 서술한다. 4장에서는 분석에 활용된 자료와 주요 변인을 소개하며, 5장에서는 분위회귀모형을 적용한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과 연구의 한계를 서술한다.

II.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선행연구

장기요양요원은 수급자의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돌봄 인력으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으로 구성된다(유병선 외, 2021). 이들은 장기요양보험제도 하에서 수급자에게 직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의 질과 제도의 효과성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김동욱, 2017; 정지훈, 2016). 그러나 장기요양요원의 낮은 임금 수준과 높은 업무 강도 등 열악한 근로 여건에 대한 문제 제기는 지속되고 있으며(나영균, 2018; 석재은, 2020), 실제 임금 수준은 국내외를 불문하고 타 산업에 비해 낮거나 최저임금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박인아, 2018; Hussein, 2017; Khavjou et al., 2023; OECD, 2023). 박인아(2018)에 의하면, 장기요양요원의 임금수준은 노동 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여성 노동자의 중위소득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장기요양서비스 현장의 낮은 임금 수준은 비단 국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OECD국가의 경우에도 돌봄 종사자의 임금 수

10 사회복지정책과 실천

준은 전체 산업 평균 임금의 80%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다(OECD, 2023). 타 산업에 대비한 임금수준 차이는 노동시장 진입 초기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된다(Khavjou et al., 2023).

이러한 현실은 장기요양요원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해당 노동시장은 저임금·저숙련 특성을 지닌 이차 노동시장으로 분류되며, 직무 특성과 자격요건에 따라 상위·하위 직종으로 구분된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황덕순 외, 2012). 장기요양요원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은 장기요양요원이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의 노동 가치가 저평가 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백종진, 2017; 석재은, 2020). 실제로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전문성과 자격 기준이 요구되는 직종이지만 요양보호사는 진입 장벽이 낮고 현장 중심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종으로 구분된다(유병선 외, 2021; 이해승, 유승현, 2013). 해당 직종에 대한 절하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수준과 서비스 수급자의 언어적·신체적 위협과 같은 부정적 상호작용으로 이어져, 요양보호사의 직무 만족도와 장기근속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남궁은하, 2024; 남우근 외, 2013; 이영선 외, 2017; 이영주, 2019).

요양보호사에 대한 낮은 보상체계와 열악한 근로 여건은 높은 이직률로 이어지며, 결과적으로 장기요양현장에서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야기한다(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OECD, 2020). 실제 국내 요양보호사의 자격 취득자는 약 163만 명이지만 실제 현장 종사자는 22.5%에 불과하며, 이직률도 약 41%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파악된다(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인력수급의 불안정은 장기요양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며, 서비스

수급자의 심리적 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권현정 외, 2018; 김수정, 2018). 따라서 장기요양요원의 근로 여건 문제는 단순한 개인 차원이 아닌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장기요양요원 노동시장에서 결정되는 임금은 해당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을 대변하고 이들의 구조적 위치를 가늠하게 하는 주요 요인이다. 이 변인이 가지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김진현 외(2015)는 요양서비스 형태, 지역, 시설 규모에 따라 인건비 수준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고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설급여 제공기관의 인건비가 재가급여 제공기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농어촌, 중소도시, 대도시 순으로 인건비 수준이 높게 조사되었다. 또한 시설 규모가 클수록 인건비 수준도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영균과 정형선(2019)은 노인장기요양보험 DB와 건강보험 자격부과DB를 활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임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연령, 성별, 근무시간, 계약형태, 도시 규모, 시설장의 자격증 보유 여부 등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해 연령이 높고, 남성이며, 근무시간이 길며, 정규직으로 고용되었으며, 중소도시 지역에 근무하거나 시설장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보유한 경우, 월평균 임금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파악하였다. 문용필과 이호용(2021)은 장기요양기관패널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요양보호사의 임금 수준과 그 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시설의 규모가 클수록, 근무시간이 길수록 임금이 높았으며, 지역별로는 중소도시 소재 기관의 임금이 농어촌보다 높았고, 대도시 소재 기관은 오히려 농어촌보다 낮은 임금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2 사회복지정책과 실천

상기의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장기요양요원의 임금은 개인의 인적 특성 외에도 근무 조건, 조직 특성, 지역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다. 공통적으로 해당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남성일수록, 근무시간이나 경력이 일정 수준 이상일수록, 그리고 대도시보다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에서 근무할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수준을 보이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선행연구들은 근무 특성을 반영한 임금체계 마련과 임금 하한선 설정 등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행된 대다수의 장기요양요원 관련 연구는 직무 및 근무 여건, 만족도, 일자리 질적 특성에 대한 정성적 분석이 대부분이며, 장기요양요원의 소득 관련된 연구는 제한적이다. 장기요양요원의 소득은 향후 고령화로 인해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는 해당 노동시장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주요 요인이지만, 이 문제에 대한 실증적 접근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장기요양요원의 소득을 다룬 일부 연구들은 다양한 자료를 통해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상당하나 장기요양요원 노동시장이 소득분위별로 상이한 구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간과하였다. 본 연구는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소득분위별 실증분석을 수행하여 분위별 소득 결정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접근을 시도한다. 실증분석을 위해 장기요양실태조사 2022년 자료를 적용하였으며, 소득분위에 대한 과학적 접근을 위해 분위회귀모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는 장기요양요원 노동시장의 소득 구조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실효성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I. 연구방법론 : 분위회귀모형

소득과 같이 연속형 수치를 갖는 변인은 일반적으로 최소자승법 (ordinary least square)을 적용한 선형회귀모형을 활용한다. 선형회귀모형은 분석에 적용이 용이한 방법론이나, 종속변인과 독립변인 간의 평균적 관계만을 추정하여, 종속변인의 전체 분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정규성, 등분산성과 같은 통계적 가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 가정이 위배될 경우 추정 결과의 신뢰성이 낮아질 수 있다.

장기요양요원의 소득은 개인의 특성, 직종, 고용형태, 근무환경 등에 따라 다양한 분포를 보이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소득 분위에 따라서 종속변인과 독립변인 간에 영향을 미치는 양상도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분석대상이 갖는 이질적 구조에서는 평균 중심의 분석만으로도 그 실태를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건부 분위에 따른 접근방식이 요구된다. 특히 임금과 같이 분포가 비대칭적이고 이상치(outlier)에 취약한 변인의 경우, 일반 선형회귀모형의 적용은 오차항의 등분산성 가정을 충족시키기 어려워 효율적인 추정 결과를 제공하기 어렵다 (권상욱, 2023; 조장식 외, 2018). 분석모형이 가지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제안된 방법으로 가중회귀모형과 분위회귀모형이 있으며, 두 모형 중에서 입체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분위회귀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Koenker와 Bassett(1978)이 제안한 분위회귀모형은 종속변인 분포의 모든 수준에서 변화율을 추정하기 위한 확장된 선형모형으로, 종속변인의 조건부 τ -분위를 활용하여 회귀모형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분위에 대한 차별적인 추정계수 결과를 제공한다. 특히 소득과 같이 분포가 다양한 변인에 적합하며, 변인의 분포나 이상치의 영향에서 상대적으로

14 사회복지정책과 실천

자유롭기 때문에 효율적인 추정결과를 제시한다. 분위회귀모형은 분위별로 상이한 가중치를 적용하면서도 전체 표본을 활용하기 때문에, 표본을 분위별로 자의적으로 구분하여 개별 추정을 실시하는 경우 발생하는 표본선택편의(sample selection bias)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조장식 외, 2018; Heckman, 1979; Koenker & Hallok, 2001). 분위회귀모형의 수식은 다음과 같다.

$$y_i = \beta_\tau x_i + u_{\tau i}, Q_T(y_i|x_i) = \beta_i x_i (i = 1, 2, 3, \dots, n)$$

위 식에서 y_i 는 종속변인, β_τ 는 τ -분위 추정계수 값, $u_{\tau i}$ 는 오차항을 나타낸다. $Q_\tau(y_i|x_i)$ 는 독립변인이 주어졌을 때, 종속변인 y 의 τ 번째 조건부 분위(conditional quantile)이다. 여기서 $Q_\tau(u_\tau|x_i)$ 는 모든 i 에서 0이다. 한편, β_τ 는 τ -분위 추정계수는 주어진 분위에서 최소화하는 값이며, 이는 아래의 수식을 이용한다.

$$\text{Min} \frac{1}{n} \left[\sum_{y_i \geq \beta_\delta} \tau |y_i - \beta x_i| + \sum_{y_i \leq \beta_\delta} (1 - \tau) |y_i - \beta x_i| \right]$$

여기서 τ 는 0~1 사이의 값을 가지며, τ 는 양(+)인 오차에 부여되는 가중치, $(1-\tau)$ 는 음(-)인 오차의 가중치이다(조장식 외, 2018).

IV. 자료 및 변인설명

1. 자료 및 변인설명

1) 자료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관련 정책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19년부터 3년 주기로 장기요양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조사는 장기요양 서비스의 구성 주체인 수급자, 기관, 요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본 연구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의 소득분위별 결정요인을 실증 분석하기 위해 2022년 장기요양요원 조사 자료를 활용한다. 개인의 소득은 연령, 성별 등의 인구학적 요인, 교육, 직업, 종사상 지위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 그리고 근무 여건 등 다양한 변인에 의해 결정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2022년 장기요양요원 자료는 이러한 요인을 포함하고 있어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자료로 판단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장기요양요원은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 조사표에 근거하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로 한정한다. 해당 조사는 2022년 7월 12일부터 25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조사 대상 4,500명 중 95.6%의 응답률을 보여 최종적으로 4,302명이 분석 표본으로 포함되었다(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 변인설명

본 연구수행을 위해 구축한 분석모형의 변인은 아래의 <표 1>과 같

16 사회복지정책과 실천

다. 먼저, 본 연구에서 활용한 종속변인은 장기요양실태조사에서 제시된 장기요양요원의 4월~6월까지 3개월간 소득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활용한다. 여기서 계산된 소득 값을 분석에 그대로 활용하지 않고 이상치 등으로 발생하는 추정계수의 효율성 훼손을 방지하고자 자연로그를 적용하였다³⁾. 한편, 시간당 임금이 아닌 월 평균 소득(3개월 간 평균 소득)을 종속변인으로 활용한 배경은 다음과 같다. 기존 임금 관련 연구에서는 월 평균 소득, 시간당 임금 등 다양한 형태의 종속변인을 사용하며, 김유선(2009)은 변인 형태는 분석 결과에 유의미한 차이를 유발하지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장기요양요원 소득과 관련하여 연구한 나영균, 정형선(2019)의 연구에서도 월 평균 소득을 종속변인으로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월 평균 소득이 장기요양노동시장에서의 노동공급 유인(incentive)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한다는 점에서 월 평균 소득을 종속변인 형태로 채택하였다. 장기요양요원 중 방문요양보호사의 경우 단시간·비정규적 근무특성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실제로 일한 시간과 무관하게 소득규모가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시간당 임금이 일정하더라도 생계유지가 어려울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해당 직종에 대한 자발적 노동공급 유인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⁴⁾. 특히 요

3) 자연로그를 취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인의 구간이 축소되어 이상치로 인한 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음. 한편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현재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장기요양요원을 대상으로 수행되어 일반적인 노동시장 비참여자 또는 실업자는 아님. 이들 중 일부는 불완전 고용형태로 참여하기 때문에 조사 기간 내에 소득이 0인 경우도 발생 가능함. 따라서 실업상태가 아닌 고용상에서의 일시적 현상임에도 이를 외면한 채 표본에서 제외하는 것은 표본 선택 편향의 문제(sample selection bias)에 직면할 수 있음.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소득분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소득의 하단 분위가 제거되어 분석결과에 효율성을 위협할 수 있음. 따라서 소득이 0인 경우도 포함하여 분석에 활용하였음

4) 김윤정 외(2016)의 연구에서 방문요양제공 여성 요양보호사의 월 평균 소득이 낮

양서비스 노동은 대부분 핵심 노동시간(core working time)에 특정 시간 대에 편중되므로, 복수기관 겸직이나 다른 직무와의 병행이 어려워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된다. 즉, 월 평균 소득 기준에서 볼 때 해당 직무는 소득-시간-효율성 측면 모두에서 비효율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따라서 장기요양요원 중 방문요양보호사와 같은 직종은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기피되는 영역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결과 해당 분야에는 고령층, 여성, 저학력층 등 선택권이 제한된 계층이 구조적으로 집중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중장기적으로 해당 직종에 고숙련 인력의 진입을 저해하고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의 구조적 맥락을 반영하기 위하여 월 평균 소득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였다(이하 월 평균 소득은 소득으로 지칭함).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독립변인은 크게 인구 및 사회경제적 변인, 조직 및 직무 특성 변인, 지역 변인으로 구분하였다⁵⁾. 여기서 소득 추정에서 활용되는 연령, 성별, 교육수준, 근무경력, 장기요양교육 참여 여부 등은 인적자본이론(human capital theory)과 관련 연구들을 기반으로 통제하였다(권상욱, 2023; Becker, 1994; Mincer, 1974). 모형에 통제한 변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인적자본이론은 교육수준, 경력, 훈련, 근로시간 등 개인이 축적한 인적 자본이 소득 수준에 주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Becker, 1994). 연령의 경우, 연령이 낮은 경우에는 노동시장에서 종사상 지위가 낮을 개연성이 높아 소득이 낮지만 이후 연령이 증가할수록 근로 경험이 축적됨

은 경우 이직의향이 높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이는 해당 직종이 총 소득 관점에서 공급 유인이 낮음을 의미함

5) 본 연구모형에서 참조집단은 개별 변인별로 비중이 가장 큰 변인으로 설정하였으며, 비중이 비슷한 경우에는 연구자의 판단에 근거하여 선정함

에 따라 소득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권상옥, 2023; 백학영, 2013). 장기요양요원을 대상으로 한 나영균, 정형선(2019)의 연구에서도 연령은 소득과 정(+)의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별의 경우, 남녀 간 소득 차이는 인적자본 측면에서 그 간극이 좁혀지면서 상당 부분 해소되었으나 여전히 존재하는 바, 남성이 여성에 대비하여 임금 수준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나영균, 정형선(2019)의 연구도 이를 지지한다. 이 배경에는 남성이 지속적인 직업훈련에 대한 투자로 인적자본이 높은 반면, 여성은 출산, 양육으로 인적자본 축적이 용이하지 않아 임금 수준이 정체된다고 언급된다(Binder et al., 2010). 교육수준은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며, 실제 교육수준과 소득은 정의 관련성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김강호, 2009; 김형근, 김일태, 2016, Becker, 1994; Mincer, 1974). 하지만 장기요양요원의 경우에는 직종 특성상 학력에 대한 진입 장벽이 높지 않기 때문에, 교육수준과 소득 간의 관계는 뚜렷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조직 및 직무 특성 변인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직종 유형은 장기요양요원을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요양보호사를 참조집단으로 설정하였다. 요양보호사는 전체 장기요양요원 중 다수를 차지하며, 진입 장벽이 낮고, 임금수준이 낮은 대표적인 직종으로 간주되고 있다(남궁은하, 2024; Hussein, 2017). 이러한 특성은 장기요양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가장 잘 반영하는 기준점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 참조집단으로 설정하였다. 한편, 소득과 해당 변인 간의 관계는 김진현 외(2015), 남궁은하(2024)의 연구를 참고하면 요양보호사의 상대적 소득 수준이 제일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형태는 정규직을 참조집단으로 하였으며, 계약직 전일제와 계약

직 시간제를 변인으로 통제하였다⁶⁾.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연구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이 차이가 나타나며, 정규직이 비정규직에 대비하여 소득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김복순, 2017; 나영균, 정형선, 2019; 이인재, 2011). 선행연구를 고려하면, 종속변인과 참조집단에 대비하여 부(-)의 상관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근무경력은 인적자본이론에서 종사자의 인적자본 축적을 통해 형성되는 전문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간주되며, 경력이 길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을 기대할 수 있다. 장기요양요원 관련 연구에서도 근무경력 과 소득은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난 바 있다(나영균, 정형선, 2019). 본 연구에서는 근무경력을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한 총 기간으로 정의하고, 연속형 변인 형태로 설정하였다. 또한 그 영향력의 증감 여부도 파악하기 위해 근무기간의 제곱 변인도 포함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급여유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 분류 기준과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의 응답항목을 바탕으로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는 급여유형1로서 재가급여 중 가정방문형 서비스에 해당한다. 주야간보호·단기보호·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급여유형 2로 분류되며, 지역사회 기반의 단기 보호 또는 공동거주형 서비스 유형에 해당한다. 급여유형3은 시설급여에 해당하는 노인요양시설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참조집단으로 설정하였다. 참조집단인 시설급여 제공 기관의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고되는 바, 나머지 급여유형은

6) 고용형태는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의 조사기준에 따라 정규직, 계약직(전일제), 계약직(시간제)로 구분하였음.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이 중 전일제는 1일 8시간, 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무하는 자, 시간제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보다 짧은 자를 의미함(고용노동부, 2020)

종속변인과 부(-)의 관련성을 보일 가능성이 존재한다(김진현 외, 2015). 한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법적으로는 시설급여에 속하나, 수용 정원, 시설 규모, 인력 배치 기준 등 운영 구조에 있어 노인요양시설과 실질적인 차이점이 존재한다⁷⁾. 이러한 차이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급여유형2로 구분하여 분석에 반영하였다.

종사자의 교육 참여는 인적자본 축적의 일환으로, 교육훈련을 통해 직무 전문성이 강화되고 서비스 질이 향상되면서 이에 대한 보상으로 소득수준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문영만, 2019). 특히 장기요양교육 참여는 직무 수행능력과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는 요소로 작용하며(이자경, 장숙량, 2018), 교육에 참여한 장기요양요원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은 소득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장기요양교육과 소득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아직 제한적이므로 체계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근무시간 유형은 주간 근무를 참조집단으로 하여, 기타(야간·교대근무)를 활용하였다. 근무시간 유형은 주간 근무에 대비하여 기타 근무 유형의 경우에는 법정 근로금액이 높으며, 관련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언급하여(문용필, 이효용, 2021), 참조집단에 대비하여 종속변인과 정(+)의 관련성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7)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입소 정원이 5-9명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노인요양시설은 1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음. 인력 배치 기준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요양보호사의 경우 노인요양시설은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 공동생활가정은 입소자 3명당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또한 노인요양시설은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계약의사 등의 배치가 의무이지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시설장이 사회복지사를 겸직할 수 있고, 의사 배치 의무가 없으며, 간호(조무)사가 있을 경우 물리(작업)치료사를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등 보다 유연한 기준이 적용됨(국민건강보험공단, 2025).

〈표 1〉 변인 설명

변인명		변인설명
종속변인		
소득	월 평균 소득	log(자료 조사시점인 4월~6월의 평균 소득)
독립변인		
인구 및 사회경제적 변인	연령	연령1: 20~39세 연령2: 40~49세 연령3: 50~59세 연령4: 60~69세 *연령5: 70세 이상(참조집단)
	성별	성별: 남성 *여성(참조집단)
	교육수준	교육1: 중학교 졸업 이하 *교육2: 고등학교 졸업(참조집단) 교육3: 전문대학 졸업 교육4: 4년제 이상 대학 졸업(대학원 포함)
조직 및 직무특성 변인	직종유형	*직종1: 요양보호사(참조집단) 직종2: 사회복지사 직종3: 간호조무사 직종4: 물리치료사
	고용형태	*고용형태1: 정규직(참조집단), 고용형태2: 계약직(전일제) 고용형태3: 계약직(시간제)
	근무경력	근무기간(월), 근무기간의 제곱
	급여유형	급여유형1: 방문요양, 목욕, 간호 급여유형2: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노인요양공 동생활가정 *급여유형3: 노인요양시설(참조집단)
	장기요양교육 참여	장기요양교육 미참여 *장기요양교육 참여(참조집단)
	근무시간 유형	*주간(참조집단) 주간 외
지역 변인	지역	지역1: 대도시 지역2: 중소도시 *지역3: 농촌(참조집단)

22 사회복지정책과 실천

지역변인으로는 농촌지역을 참조집단으로 설정하였으며, 대도시, 중소도시를 변인으로 통제하였다. 해당 변인은 김진현 외(2015)의 연구는 농촌의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나영균과 정형선(2019), 문용필과 이호용(2021)은 중소도시의 소득수준이 타 지역 대비 높다고 보고 되어 종속변인과의 관계를 예측하는 것이 모호하다.

본 연구는 이론적 기반과 기존 문헌을 바탕으로 주요 변인을 설정하였으며, 각각의 변인이 장기요양요원의 소득에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 실증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V. 분석결과

1. 기초통계 분석결과

<표 2>는 장기요양요원의 기초통계를 표본 전체와 백분위 기준 각 25분위별로 소득분위를 구분하여 제시한 결과이다.

〈표 2〉 전체 및 분위별 총 소득

(단위: 만 원)

변인	전체 (N=4,302)		그룹1 (0~25분위) (N=1,076)		그룹2 (25~50분위) (N=1,222)		그룹3 (50~75분위) (N=931)		그룹4 (75~100분위) (N=1,073)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총 소득	170.77	66.50	71.48	34.12	178.19	10.89	198.74	4.54	237.62	36.22

분석 결과, 전체 장기요양요원의 총소득은 약 170.8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1분위는 약 71.5만 원, 2분위는 약 179.2만 원, 3분위는 약 198.7만 원, 4분위는 약 237.6만 원으로 분위별 총 소득이 도출되었다.

인구 및 사회경제적 변인과 관련한 기초통계는 아래의 <표 3>과 같다. 연령 분포를 보면, 전체 표본에서는 50대와 60대의 비중이 각각 약 32.4%, 3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득분위별로 분석한 결과, 소득분위가 낮은 경우에는 60대와 70대 이상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특히, 70대의 비중이 다른 분위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 결과는 연령이 높은 집단의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음을 의미한다. 반대로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50대 미만의 집단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장기요양요원의 소득수준이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소득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성별의 경우에는 전체 표본 중 여성이 약 91.1%로 약 8.9%인 남성을 압도하였다.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낮은 소득분위에서는 여성의 비중이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여성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초통계 결과에 근거하면 여성의 비중이 높은 것과 별개로 경제적 여건은 남성이 여성에 대비하여 긍정적인 상황을 유추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결과만으로 여성이 장기요양요원 노동시장에서 소득에 유리하지 않다는 결론을 담보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교육수준의 경우, 전체 표본 기준으로 고등학교 졸업이 41.0%로 제일 높은 비중을 나타냈으며, 전문대 졸업(22.0%), 대학교 졸업 이상(21.6%), 중졸 이하(15.4%) 순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분위별로 구분한 경우, 저소득분위에서는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의 비중이 높게

24 사회복지정책과 실천

집계된 반면, 고소득분위로 갈수록 전문대 졸업, 대학교 졸업 이상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반적으로 소득과 교육수준의 정(+)의 관계라는 기존 연구들과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 인구 및 사회경제적 변인

변인		전체		그룹1 (0~25분위)		그룹2 (25~50분위)		그룹3 (50~75분위)		그룹4 (75~100분위)	
		%	표준 편차	%	표준 편차	%	표준 편차	%	표준 편차	%	표준 편차
연령	20~39세	10.5	.306	1.7	.128	10.6	.308	13.9	.345	16.3	.369
	40~49세	13.2	.338	6.6	.248	14.3	.349	12.7	.332	19.0	.392
	50~59세	32.4	.468	24.1	.427	38.8	.487	33.0	.470	32.9	.470
	60~69세	36.7	.482	48.8	.500	33.1	.470	35.6	.479	29.6	.456
	70세 이상	7.2	.259	18.8	.391	3.2	.175	4.8	.215	2.2	.147
성별	남성	8.9	.284	5.4	.225	6.6	.248	8.3	.275	15.6	.362
	여성	91.1	.284	94.6	.225	93.4	.248	91.7	.275	84.4	.362
교육수준	중학교 졸업 이하	15.4	.360	27.3	.445	12.3	.328	13.7	.344	8.3	.275
	고등학교 졸업	41.0	.491	49.7	.500	46.9	.499	41.8	.493	24.9	.432
	전문대 졸업	22.0	.414	11.4	.318	21.6	.412	21.5	.410	33.5	.472
	4년제 졸업 이상	21.6	.411	11.6	.319	19.2	.394	23.0	.421	33.3	.471

조직 및 직무특성, 근무지역에 대한 기초통계는 <표 4>와 같다. 직종 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표본에서는 요양보호사가 58.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분위에서는 요양보호사의 비중이 약 91.8%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고소득분위에서는 사회복지사와 물리치

료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장기요양 노동시장이 직종별로 분절된 구조를 보이며, 일부 직종이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 구간에 편중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물론 직무 내용과 자격 요건 등에서 차이가 존재하지만, 이러한 분포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지속성과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직종 간 소득 구조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고용형태는 정규직이 전체 조사 대상의 약 60.7%를 차지하고 있으며, 계약직 전일제와 시간제는 각각 약 16.5%, 22.7%로 집계되었다. 이를 소득분위로 구분하는 경우, 소득분위가 올라갈수록 정규직의 비중이 66.6% → 74.4% → 85.1%로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근무경력도 경우에는 약 63개월의 경력을 평균적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통계결과에 의하면 장기요양요원의 근무경력도 그룹1~그룹3 소득분위 그룹에서는 가시적 차이가 부재하지만 그룹 4 소득분위에서는 약 82.5개월로 근무경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급여유형은 전체 표본 기준으로 26.8%~42.9% 사이로 그 비중이 크게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소득분위로 구분하여 기초통계를 살펴보면 급여유형별로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났다. 방문요양, 목욕, 간호는 저소득분위에 그 비중이 93.5%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분위가 올라갈수록 비중이 감소하였다. 반면 노인요양시설은 상대적으로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그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결과는 급여유형에 따라 소득 편차가 발생함을 보여주고 있다. 장기요양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비중은 전체 표본과 소득분위별 통계결과 모두 20%대로 집계되어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기 어렵다. 주간 외 근무 비중은 전체 표본의 약 23.6%로 나타났다. 소득이 0~25분위 구간에서는 주간 외 비중이 약 7.5%로 낮은 반면, 소득분위가 높아지는 경우에는

26 사회복지정책과 실천

〈표 4〉 조직 및 직무특성 및 지역 변인

변인		전체		그룹1 (0~25분위)		그룹2 (25~50분위)		그룹3 (50~75분위)		그룹4 (75~100분위)	
		%	표준 편차	%	표준 편차	%	표준 편차	%	표준 편차	%	표준 편차
직종 유형	요양보호사	58.2	.493	91.8	.274	54.4	.498	54.0	.498	32.4	.468
	사회복지사	16.7	.373	1.0	.100	18.5	.388	18.9	.391	28.5	.451
	간호(조무)사	18.1	.384	6.2	.241	24.4	.429	18.4	.387	22.5	.417
	물리(작업)치료사	7.0	.255	1.0	.096	2.70	.162	8.7	.282	16.6	.372
고용 형태	정규직	60.8	.488	18.0	.384	66.6	.471	74.4	.436	85.1	.356
	계약직 전일제	16.5	.371	10.1	.300	22.7	.419	21.5	.410	11.5	.319
	계약직 시간제	22.7	.419	71.9	.449	10.7	.308	4.1	.198	3.4	.180
근무 경력	근무기간	63.4	.47.6	58.3	.46.1	52.6	.43.6	61.4	.45.5	82.5	.49.6
급여 유형	방문요양, 목욕, 간호	30.3	.459	93.5	.246	11.8	.322	6.3	.243	9.0	.285
	주야간, 단기, 공동생활	26.8	.442	3.7	.189	44.1	.496	31.9	.466	25.7	.437
	노인요양시설	42.9	.495	2.8	.164	44.1	.496	61.8	.486	65.3	.476
교육 참여	장기요양교육 미참여	25.2	.434	28.4	.451	24.2	.428	25.8	.437	22.7	.419
근무 유형	주간 외 근무	23.6	.424	7.5	.264	23.1	.421	38.7	.487	27.3	.445
지역	대도시	33.1	.470	45.3	.498	33.5	.472	29.7	.456	23.6	.424
	중소도시	36.2	.480	37.7	.484	36.9	.482	35.6	.479	34.4	.475
	농촌	30.7	.461	17.0	.375	29.6	.456	34.7	.476	42.0	.493

약 25% 이상의 주간 외 근무 비중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근무지역의 경우에는 전체 표본에서는 약 30.6%(농촌)~약 36.2%(중소도시)의 비중을 보여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소득분위별로 접근하는 경우, 소득이 낮은 집단에서는 대도시 비중이 약 45.3%로 높게 나타난 반면, 농촌 지역은 약 17.0%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비중 차이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역전되어 소득분위가 증가할수록 농촌 비중이 대도시 비중을 압도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시설 규모 차이, 장기요양 유형의 차이 등에서 비롯되는 차이인 것으로 추측된다(나영균, 정형선, 2019; 문용필, 이호용, 2021; 유병선 외, 2021).

<표 5>는 소득을 4개의 분위로 구분하여, 각 분위별 평균 소득과 표준편차를 제시하고 있다. 각 분위별 경계값은 최댓값을 기준으로 140만 원, 190만 원, 207.6만 원이다. 우선 각 분위별 표준편차 값을 살펴보면, 25분위 이하, 75분위 이상의 표준편차 값은 30 이상으로 크게 분석된 반면, 25~75분위 값은 약 10.8, 4.54로 매우 작게 나타났다. 즉 정규분포와 근사한 형태를 보인다고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각 분위별 평균값을 살펴보면, 25분위 이하 소득 집단은 약 71.5만 원으로 나타났다. 25~50분위, 50~75분위, 75분위 이상의 경우에는 각각 약 178만 원, 198만 원, 약 237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전체적으로 25분위 이상에서는 각 분위별 평균값의 차이가 크지 않게 나타났지만 25분위 이하의 경우에는 이 구간을 기준으로 약 107만 원의 차이를 보였다. 즉, 25분위 이하의 집단은 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타 집단과 상당한 차이가 존재함을 추측할 수 있는 결과이다.

〈표 5〉 소득분위별 소득 평균(4분위)

(단위: 만 원)

항목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그룹1(0~25분위)	71.48	34.12	0.00	140.00
그룹2(25~50분위)	178.19	10.89	140.33	190.00
그룹3(50~75분위)	198.74	4.54	190.33	207.67
그룹4(75~100분위)	237.62	36.22	208.00	520.00

2. 분위회귀모형 분석결과

분위회귀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 6>과 같다. 분위회귀분석은 사분위수와 소득 분포의 양 극단(상위 10%, 하위 10%)을 포함하는 $\tau=0.1$, $\tau=0.25$, $\tau=0.5$, $\tau=0.75$, $\tau=0.9$ 의 소득분위로 세분화하였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tau=0.1$)부터 고소득층($\tau=0.9$)에 이르는 전반적인 분위에서의 소득 결정 요인을 살펴보았다. 본 분석은 부트스트랩(bootstrap) 방식을 적용, 100회 반복 과정을 거쳐 신뢰성을 확보한 추정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모형은 다중공선성(VIF)이 5이하인 변인들로만 구성되어 변인 간의 상관성도 통제하였다. 분석결과, 전체적인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Pseudo R-square는 약 0.17~0.52 수준으로 확인되어, 본 분석모형의 설명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Mcfadden, 1979).

독립변인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령은 참조집단인 ‘70

세 이상'에 대비하여 소득분위별로 상이한 영향을 보였다. 25분위 이하 저소득 구간에서는 대부분의 연령집단(2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에서 음(-)의 계수가 나타났으며, 25분위 집단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10분위 집단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되지 않았고, 회귀계수의 차이도 간접적으로 살펴보면 크지 않아, 이 구간에서는 연령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한 25분위 집단에서는 동일한 조건임에도 70대 이상 고령 집단이 타 집단에 대비하여 소득수준이 긍정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50분위 이상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50~59세, 60~69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계수가 공통적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변화는 생애주기에 따른 소득의 증가 패턴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소득분위에 따른 소득에 대한 연령효과의 부호 역전 현상은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시장 특성과 고령 근로자의 잔류효과를 결부지어 해석이 가능하다. 장기요양요원 노동시장 공급은 50대 이상이 약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표 3> 참고), 일부 직종은 연령 제한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고령층도 일정 시간 내에서 노동을 지속하며 노동시장에 잔류, 일정 수준의 소득을 유지한다. 반면 젊은 연령층은 시간제 근로, 또는 경력 초기 단계로 인해 초기 진입 시 소득 획득에 어려움을 겪을 개연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요인으로 저소득 분위에서는 고령층에 대비하여 소득 여건이 우호적이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반면, 소득분위가 높아지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소득 궤적과 동일하게 70세 이상 집단에 대비하여 대부분이 소득이 높은데, 그 배경에는 업무 수행 능력, 업무 시간의 확보 등이 자리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성별의 경우, 참조집단인 '여성'에 대비하여 남성은 모든 분위에서 소

득과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회귀계수의 값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높은 종사 비증과는 별개로 장기요양서비스 시장에서 남성의 노동가치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인식되어짐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선행연구(나영균, 정형선, 2019)와도 일치한다. 한편, 해당 결과는 남성 종사자 중 일부가 시설장, 중간관리자 등 상대적으로 고소득 직종에 분포되어 있어 전반적인 성별 임금 차이가 나타나는 구조적 특성으로 추측할 수도 있다(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교육수준의 경우에는 10분위와 25분위는 ‘고등학교 졸업’에 대비하여 전문대학 졸업, 4년제 이상 대학 졸업은 종속변인과 부(-)의 방향을, 중학교 졸업 이하는 정(+)의 방향을 보였으나 대부분의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해당 결과는 직관적 해석으로 저소득분위에서는 인적자본으로 대별되는 교육수준이 소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하며, 직무 특성상 현재의 장기요양서비스 시장은 교육수준과 무관하게 업무 수행이 가능한 구조임을 시사한다. 반면 50~90분위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에 대비하여 전문대학 졸업, 4년제 이상 대학 졸업은 소득과 정(+)의 관계를 보였고, 특히 75분위와 90분위에서는 1% 수준 내에서 통계적으로 종속변인과 정(+)의 계수가 나타났다. 교육수준의 영향력은 75분위 4.5%(전문대학 졸업), 5.5%(4년제 이상 대학 졸업)보다 90분위 6.7%(전문대학 졸업), 12.0%(4년제 이상 대학 졸업)로 소득분위가 높은 집단에서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소득분위가 올라갈수록 인적자본 축적과 관련 있는 장기요양업무(사회복지, 간호 등)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인구 및 사회경제적 변인인 연령, 성별, 교육수준을 통해 소득분위별로 종속변인과 해당 변인들 간에는 상이한 영향력이 구조적으로 형성되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고, 특히 연령과 교육수준의 경우에는 저소득분위와 고소득분위가 구조적으로 명확히 분리되었음을 추정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단일 평균 임금이 아닌, 소득분위별 소득 결정 요인의 이질성을 밝힘으로써 기존연구(나영균, 정형선, 2019; 백학영, 2013)를 확장한 것으로 학술적 의의를 지닌다.

직종, 종사상 지위, 급여유형, 장기요양교육 수업 참여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직종의 경우에는 모든 분위에서 참조집단인 ‘요양보호사’에 비해서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모두 소득과 정(+)의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대부분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추정계수를 통해 영향력을 간접적으로 비교해보면, 물리치료사>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 순으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변인설명에서 밝힌 요양보호사의 낮은 임금 수준을 지적한 선행연구(김진현 외, 2015; 남궁은하, 2024; Hussein, 2017)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최근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 개선 노력이 경주되는 바,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정책과의 정합성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박인아, 2018;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2). 종사상 지위의 경우에는 모든 소득분위에서 참조집단인 ‘정규직’에 대비하여 계약직 전일제, 계약직 시간제 모두 종속변인과 부(-)의 상관성이 확인되었으며, 통계적으로도 1% 이내에서 유의미성을 갖춘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노동시장에서 고용형태가 소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결과로, 선행연구(나영균, 정형선, 2019; 이인재, 2011)의 결과와도 부합한다. 근무경력에 경우에는 경력과 소득의 상관성이 정비례한다는 인적자본이론과 기 수행된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확보하였으며, 모든 소득분위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나영균, 정형

선, 2019; Mincer, 1974). 하지만 소득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급여유형의 경우, ‘노인요양시설’에 대비하여 모든 소득분위에서 방문요양, 목욕, 간호와 주야간, 단기, 노인공동생활의 소득에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김진현 외(2015)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방문요양, 목욕, 간호의 경우에는 ‘노인요양시설’에 대비하여 소득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범위 내에서 소득분위에 따라 단위 당 약 10.4%~146%까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방문요양, 목욕, 간호 등의 급여유형은 소득에 있어 여건의 어려움을 유추해 볼 수 있으며, 특히 저소득분위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어 급여유형을 중심으로 한 추가적인 연구가 시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요양교육 참여 여부의 경우에는 모든 분위에서 참여집단에 대비하여 수업을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 소득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50분위와 90분위 계층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성을 확보하였다. 해당 분석결과는 교육훈련이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노동패널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문영만(2019)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현재 장기요양요원에 교육 참여에 대한 연구는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 본고의 분석결과는 장기요양요원의 소득수준 개선을 위해서는 교육 제공 및 종사자의 교육 참여 유인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근무시간 유형의 경우에는 ‘주간 근무’에 대비하여 주간 외 근무가 소득에 유리함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소득분위가 올라갈수록 그 영향력(=magnitude)이 통계적 유의성을 1% 범위에서 갖춘 채 증가하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즉, 주간에 대비하여 근무여건이 열위에 있는 주간 외 근무가 소득이 높다는 선행연구(문용필, 이호용, 2021)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근무지역의 경우에는 농촌지역에 대비하여 도시 및 중소도시 장기요

양요원의 소득수준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그 영향력은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농어촌 지역의 장기요양요원이 대도시 및 중소도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 수준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농어촌의 소득(149만 원)이 대도시(103만 원) 및 중소도시(122.5만 원)에 비해 높다는 조사(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및 선행연구 결과와도 부합한다(김진현 외, 2015; 문용필, 이호용, 2021). 대도시의 임금수준이 낮은 것은 정은영 외(2014)가 서술한 바와 같이 해당 지역에 장기요양시설이 집중되어 인력 공급이 많은 반면, 농어촌은 인력 수급이 어려운 관계에 기인한다(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그 외에도 대도시의 경우 다회 이직 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장기근속수당 수령 비율이 낮은 이유로도 추측할 수 있다(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다만 이러한 해석은 가설적 설명에 해당하며, 향후 보다 정밀한 구조적 분석을 통해 그 원인을 체계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표 6〉 분위별 회귀분석 결과

항목		$\tau=0.1$		$\tau=0.25$		$\tau=0.5$		$\tau=0.75$		$\tau=0.9$	
		추정계수	표준 오차	추정계수	표준 오차	추정계수	표준 오차	추정계수	표준 오차	추정계수	표준 오차
상수		5.164***	0.041	5.242***	0.018	5.226***	0.020	5.198***	0.031	5.306***	0.030
연령	20~39세	-0.026	0.036	-0.061***	0.016	-0.013	0.018	0.046*	0.027	0.034	0.032
	40~49세	-0.032	0.036	-0.049***	0.016	0.007	0.015	0.094***	0.025	0.062	0.027
	50~59세	-0.017	0.034	-0.047***	0.014	0.023*	0.014	0.101***	0.023	0.070***	0.019
	60~69세	-0.002	0.035	-0.031**	0.014	0.030**	0.014	0.105***	0.021	0.068***	0.019
성별	남성	0.002	0.017	0.020**	0.011	0.028***	0.011	0.053***	0.013	0.072***	0.015

34 사회복지정책과 실천

항목		$\tau = 0.1$		$\tau = 0.25$		$\tau = 0.5$		$\tau = 0.75$		$\tau = 0.9$	
		추정계수	표준 오차	추정계수	표준 오차	추정계수	표준 오차	추정계수	표준 오차	추정계수	표준 오차
교육 수준	중졸 이하	0.012	0.015	0.017*	0.009	-0.001	0.007	-0.010***	0.012	-0.001	0.013
	전문대 졸	-0.010	0.014	-0.005	0.008	0.010	0.008	0.045***	0.011	0.067***	0.021
	4년제 이상	-0.007	0.014	-0.005	0.009	0.016*	0.009	0.055***	0.015	0.120***	0.021
직종 유형	사회복지사	0.061***	0.017	0.066***	0.012	0.100***	0.013	0.153***	0.018	0.127***	0.026
	간호조무사	0.014	0.014	0.015*	0.008	0.037***	0.008	0.078***	0.011	0.105***	0.020
	물리치료사	0.089***	0.027	0.118***	0.014	0.133***	0.013	0.155***	0.017	0.139***	0.030
고용 형태	계약직 전일제	-0.028**	0.012	-0.021***	0.005	-0.029***	0.006	-0.036***	0.007	-0.034***	0.010
	계약직 시간제	-0.344***	0.101	-0.282***	0.066	-0.228***	0.054	-0.211***	0.029	-0.108***	0.015
근무 경력	근무기간	0.001*	0.000	0.001***	0.000	0.001***	0.000	0.001***	0.000	0.001***	0.000
	근무기간 ²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급여 유형	방문요양, 목욕, 간호	-1.463***	0.092	-0.997***	0.032	-0.666***	0.054	-0.223***	0.028	-0.104***	0.020
	주야간, 단기, 노인공동생활	-0.030***	0.006	-0.032***	0.005	-0.023***	0.005	-0.005	0.009	0.003	0.010
교육 참여	장기요양 교육 미참여	-0.018	0.012	-0.008	0.006	-0.011**	0.005	-0.008	0.008	-0.011***	0.010
근무 시간 유형	주간 외 근무	0.016	0.014	0.031***	0.008	0.053***	0.008	0.091***	0.009	0.083***	0.009
지역	대도시	-0.023**	0.010	-0.020***	0.006	-0.041***	0.007	-0.070***	0.010	-0.083***	0.013
	중소도시	-0.011	0.009	-0.012*	0.006	-0.020***	0.006	-0.035***	0.009	-0.053***	0.013
Pseudo R ²		0.5222		0.5247		0.3546		0.2002		0.1793	
표본 수		4,302									

주) ***p<0.01 **p<0.05 *p<0.1

〈표 7〉 분위별 독립변인별 회귀계수 차이 검증

항목		$\tau = 0.1$ vs $\tau = 0.5$	$\tau = 0.5$ vs $\tau = 0.9$	$\tau = 0.1$ vs $\tau = 0.9$
연령	20~39세	-0.0127	-0.0472	-0.0599
	40~49세	-0.0389	-0.0548	-0.0938**
	50~59세	-0.0400	-0.0473*	-0.0872**
	60~69세	-0.0320	-0.0376*	-0.0696**
성별	남성	-0.0259**	-0.0440**	-0.0699***
교육 수준	중학교 졸업 이하	0.0139	-0.0007	0.0132
	전문대학 졸업	-0.0197	-0.0570***	-0.0767***
	4년제 이상 대학 졸업	-0.0235	-0.1039***	-0.1273***
직종 유형	사회복지사	-0.0391***	-0.0266	-0.0656**
	간호조무사	-0.0233*	-0.0685***	-0.0918***
	물리치료사	-0.0444**	-0.0060	-0.0504*
고용 형태	계약직 전일제	0.0001	0.0055	0.0060
	계약직 시간제	-0.1153	-0.1205**	-0.2357***
근무 경력	근무경력	-0.0002	-0.0005	-0.0007
	근무경력_제공	0.0000	0.0000	0.0000
급여 유형	방문요양, 목욕, 간호	-0.7973***	-0.5621***	-1.3594***
	주야간, 단기, 노인공동생활	-0.0069	-0.0264**	-0.0334***
교육 참여	장기요양교육 수업 미참여	-0.0074	-0.0003	-0.0077
근무 시간 유형	주간 외 근무	-0.0365***	-0.0300***	-0.0665***
지역	대도시	0.0175*	0.0419***	0.0594***
	중소도시	0.0089	0.0331***	0.0419***

주) ***p<0.01 **p<0.05 *p<0.1

분위회귀분석 결과를 통해 소득분위별로 소득에 미치는 독립변인의 영향력은 종속변인에 대한 부호 변화나 추정계수의 크기(=magnitude) 변화를 통해 차별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위 분석결과는 분위 분석을 통해 도출된 추정계수의 직접적인 차이 유무를 설명하는 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 본 과정에서는 추정계수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하기 위해 t-검정을 적용하였다⁸⁾. t-검정은 저소득층인 10분위, 중간소득층인 50분위 고소득층인 90분위로 구분하여 통계검정을 수행하였으며, 이 결과는 위 <표 7>과 같다.

조직 및 직무특성 변수를 중심으로 위 결과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직종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모두 10분위를 기준으로 50분위, 90분위와 통계적으로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고용형태의 경우에는 계약직 시간제는 90분위를 기준으로 10분위, 50분위와 추정계수의 차이가 나타났다. ‘방문요양, 목욕, 간호’의 경우에는 10분위-50분위, 50분위-90분위, 10분위-90분위 모든 검정에서 1%이내에서 통계적으로 회귀계수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6>의 회귀분석 결과와 결합하여 살펴보면, ‘방문요양, 목욕, 간호’는 소득분위가 증가할수록 종속변인과의 영향력이 희석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주·야간, 단기, 노인공동생활’에서는 90분위를 중심으로 10분위, 50분위와 통계적으로 차이가 나타났다.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교육의 경우에는 <표 6>의 분위회귀분석의 추정계수의 변화는 나타나지만 통계적으로 이것이 유효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근무시간 유

8) 귀무가설(두 분위별 회귀계수의 차이가 없다.)을 판별하는 t-검정의 식은 다음과 같음

$$t\text{-검정: } t = \frac{\beta_{10} - \beta_{90}}{SE_D}$$

형의 경우에는 소득분위별 비교를 통해 추정계수의 통계적 차이가 1% 수준 내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의 경우에는 대도시는 소득분위 간 비교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10% 이내에서 추정계수의 변화가 차이가 있음을 입증하였으며,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90분위를 중심으로 10분위와 50분위의 차이가 존재함을 파악하였다.

VI. 결론

한국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는 장기요양서비스 수요의 지속적인 확대를 예고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한 제도 정비와 인력 확보는 중요한 사회복지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인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은 노동시장 내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 창출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과제로 주목받고 있다. 그럼에도 기존 국내 연구는 주로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이나 직무 만족도 등 비경제적 지표에 집중되어 왔으며, 소득 수준과 그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대표성이 확보된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소득 결정요인을 소득분위별로 분석하였다. 특히 분위회귀모형을 적용함으로써 평균 중심의 분석이 포착하지 못하는 소득 분포의 이질성을 구체적으로 조명하고, 다양한 소득 계층 내 구조적 제약 요인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과 교육수준은 소득 분위별로 상이한 영향을 보였다. 먼저, 연령의 경우 70세 이상을 기준으로 종속변인에 대해 저소득분위에서는

부(-)의 방향을, 고소득분위에서는 정(+)의 방향으로 나타났다. 해당 결과는 저소득분위에서는 장기요양노동시장에서 고령층이 일정 수준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지하며 최소한의 소득을 실현하는 반면, 젊은 층은 경력 부족, 고용 여건 불안정 등으로 소득 상황이 좋지 않음을 보여준다. 고소득 분위에서는 노동공급 역량과 경력이 축적된 중장년층이 중심을 이루며,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이 소득 우위를 보인다. 한편, 교육수준 역시 분위별로 이질적인 효과를 보였다. 저소득 분위에서는 고졸 이하 학력이 집중되어 있으며, 고소득 분위로 갈수록 대졸 이상 학력자의 비중이 증가한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 수준이 직종·기관유형·직책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종합하면, 연령과 교육수준이 장기요양노동시장에서 소득을 계층화시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존연구(백학영, 2013; 나영균, 정형선, 2019)와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동일 변수라 하더라도 소득 분위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써 계층 내부의 격차를 조명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기여가 있다.

둘째, 직종에 따라 소득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모든 소득 분위에서 요양보호사는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에 비해 소득 수준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즉, 요양보호사가 상대적으로 경제적 처우가 노동시장에서 우호적이지 않다고 유추할 수 있다. 기초통계 분석결과에서 100분위 기준 25분위 이하의 저소득집단에서 평균 소득은 약 71.5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약 91.5%가 요양보호사였다. 분위회귀분석 결과에서도 요양보호사는 소득분위가 올라갈수록 타 직종에 대비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노동시장 내에서 가장 취약한 직종임을 의미하며, 향후 정책적 지원

이 집중되어야 할 핵심 집단임을 보여준다.

셋째, 급여유형별로는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종사자의 소득이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특히 저소득 분위에서 그 격차가 두드러졌다. 이는 재가서비스 기반 방문요양, 간호, 목욕에 근무하는 요원이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 수준에 분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방문요양보호사의 경우, 하루 평균 근로시간이 제한적이고 포괄임금 체계로 소득이 산정되기 때문에, 총 임금 기준으로 분석할 경우 구조적으로 낮은 분위에 위치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수급자의 일정 변경이나 중도 해지 등으로 인해 실제 근로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도 소득 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남궁은하, 2024). 이러한 구조적 한계는 개별 요양보호사의 노력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재가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

넷째, 근무지역의 경우에는 장기요양요원이 농촌지역에 근무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대도시, 중소도시의 소득여건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영향력의 크기가 컸다. 지역별 장기요양요원의 경제적 처우의 차이는 도시 지역의 인력 과잉, 기관 간 경쟁 심화, 근속 기간 차이에 따른 수당 차등 등 복합적 요인에서 기인할 수 있다. 특히 노인요양시설의 농촌지역 직종 분포와 고소득 분위의 연계 가능성은 향후 정밀한 구조 분석을 통해 확인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분위회귀분석 결과의 10분위, 50분위, 90분위에 대한 통계적 검정 결과, 10분위와 90분위, 50분위와 90분위의 통계적 차이가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동일한 변인이라도 소득 분위에 따라 영향력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는 장기요양노동시장이 단일한 구조로 설명되기 어렵고, 내부적으로 분절화 된 소득 구조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현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중인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정책방향과(박인아, 2018; 보건복지부, 2022; 서울특별시, 2024) 그 시의성을 공유하며, 특히 요양보호사나 방문형 서비스 종사자와 같이 소득구조상 취약한 집단에 대해 보다 세분화되고 구체적인 정책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개선비(임금) 지원 확대, 복지 포인트 확대, 휴일 및 심야 돌봄 종사자 지원 등 다양한 처우 개선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처우개선비 지원이 일부 법인 시설에 집중되거나 재가서비스 종사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사례가 많아, 정책의 실질적인 형평성 문제(지나영, 2024)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실천적 정책 과제를 제안한다. 먼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의 지급 기준은 고용형태, 근무유형, 근속기간 등 다양한 노동조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이 법인시설이나 정규직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지원구조는 재가서비스 종사자와 같은 취약한 고용형태의 노동자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하며, 실질적 형평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소득구조상 열위에 있는 집단까지도 제도적 보호 범위 안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연한 설계가 요구된다. 또한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과 같은 비정규직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들의 소득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단시간 근로, 근무 일정의 불규칙성 등으로 인해 총소득이 낮고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기 쉽다. 특히 방문형 장기요양요원의 경우, 수급자나 기관의 일방적이고 갑작스러운 서비스 제공 취소나 일정 변경으로 인해 예측하지 못한 임금 손실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남궁은하, 2024). 이러한 소득 손실은 근로자 개인의 통제로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

로,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예컨대, 수급자의 갑작스러운 서비스 중단 또는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일정 기간 근무시간 확보 또는 소득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러한 실천적 제안들은 장기요양요원의 단순한 처우 개선을 넘어, 장기요양 노동시장의 구조 개선과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토대로 기능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 자료 구성의 제한이다. 본 연구에 활용된 장기요양실태조사 자료는 정부가 주도한 조사로 신뢰성과 대표성이 충분하며, 약 4,000개에 이르는 표본 수도 실증연구에 적합한 규모라 판단된다. 다만, 일부 시설 특성(예: 법인, 공공기관, 비영리기관)에 속한 표본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해당 특성을 변인으로 포함하는 연구모형을 설정하는 데 한계가 존재하였다. 더불어, 일부 급여유형의 세부 구분이 미비하여 서비스 유형 간 비교에서 일정한 해석상의 제약이 존재할 수 있다(예: 재가급여 내 가족 요양보호사). 둘째, 노동시장 연구에 활용되는 조사항목의 부재이다. 이전 직장에 대한 구체적 정보(소득, 근무경력, 이직 횟수 등), 직장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직주근접 변인(통근유형, 통근시간 등),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행정구역 변인이 조사되는 경우, 보다 풍부한 연구결과를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장기요양 노동시장의 임금 수준을 타 산업군과 비교하여 적정 임금수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해외 연구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의 임금이 유사 산업군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적정 임금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타 산업과의 비교연구를 수행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직종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42 사회복지정책과 실천

본 연구는 장기요양요원의 소득분위별 결정요인을 실증분석하고 정책 대안을 계량모형을 통해 정량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를 계기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 (2020). 「2020년 고용형태 공시제도 매뉴얼(기업)」. 고용노동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5). 「2025년 장기요양기관 업무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 권상욱 (2023). “소득분위별 노동소득의 연령 효과 추정”. 『한국자료분석학회』, 25(1), 457-466.
- 권현정, 전민욱, 김혜나, 김민아 (2018). “요양보호사의 이직 및 재취업 결정요인의 통합적 분석모델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73(1), 445-468.
- 권현정, 홍경준 (201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9(1), 33-57.
- 김강호 (2009). “학력과 직업훈련 참여가 임금에 미치는 효과”.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1(3), 123-151.
- 김동욱 (2017).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감정노동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직무스트레스의 매개효과 및 직업정체성의 조절효과』. 박사학위논문, 신라대학교 일반대학원.
- 김복순 (2017). “비정규직 고용과 근로조건”. 『월간노동리뷰』, 1월호, 91-101.
- 김수정 (2018). “시설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과 서비스 질과의 관계에서 돌봄노동 평가의 매개 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5), 58-70.
- 김유선 (2009). “한국 노동시장의 임금결정요인-OLS 회귀분석과 분위회귀분석-”. 『산업경제연구』, 19(2), 1-25.
- 김윤정, 김영재, 진수호 (2016).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과 소진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6(9), 527-535.
- 김진현, 임은실, 배현지, 서동민, 정수용 (2015).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인건비 수준과 분포에 관한 실증분석”. 『장기요양연구』, 3(2), 96-121.
- 김형근, 김일태 (2016). “임금결정요인 및 성별 임금격차 분석: 지역고용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지역경제연구』, 14(3), 5-20.
- 나영균 (2018). 『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정책이 임금인상에 미친 효과』.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나영균, 정형선 (2019). “요양보호사 임금결정요인 분석”. 『보건행정학회지』, 29(4), 496-501.
- 남궁은하 (2024). “장기요양요원의 근로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한국보건사회

44 사회복지정책과 실천

- 연구원], 328, 54-70.
- 남우근, 최경숙, 윤지영, 류임량, 장보현, 임지민 (2013). 「요양보호사 노동실태와 개선방안」.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서울특별시.
- 문영만 (2019). “재직자의 교육훈련이 임금, 직무만족도, 이직에 미치는 영향”. 『노동정책연구』, 19(2), 103-133.
- 문용필, 이호용 (2021). “장기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임금 실태 및 결정요인 분석: 인가사회학적 요인, 근무형태 요인, 근무기관 요인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2(2), 3-23.
- 박선숙 (2020). “노인의 삶의 만족도 유형과 관련 변인 연구”. 『사회복지정책과 실천』, 6(1), 79-109.
- 박인아 (2018). “장기요양요원 처우수준분석 및 정부의 책임성 강화 방안-노인요양시설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73(3), 143-165.
- 백종진 (2017).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가 인식하는 클라이언트 폭력성과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역할 스트레스의 매개 효과」.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 백학영 (2013).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와 불평등 그리고 빈곤: 연령집단별 차이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40(3), 75-105.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2019년 장기요양실태조사」. 보건복지부.
- _____ (2022).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 보건복지부.
- 서울특별시 (2024). 「제3기(2025~2027년)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종합계획」. 서울: 서울특별시 복지실 어르신복지과.
- 석재은 (2020). “코로나19 국면에서 재조명된 장기요양 돌봄노동자의 취약성과 사회적 과제”. 『한국사회복지학』, 72(4), 125-149.
- 유병선, 정요한, 이경원, 박승희 (202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실태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장기요양연구』, 9(1), 1-22.
- 이영선, 송명섭, 박정환 (2017). “요양보호사의 감정노동과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의 관계: 직무관련 삶의 질 매개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8(10), 336-343.
- 이영주 (2019).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감정노동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경영연구』, 6(2), 1-18.
- 이자경, 장숙량 (2018). “국가 간 비교를 통한 요양보호사 교육의 고도화 방안”.

- 「장기요양연구」, 6(1), 6-30.
- 이주재 (2011). 노인장기요양 인력의 직무 스트레스와 직무 만족이 이직 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31(2), 277-290.
- 이혜승, 유승현 (2013). 노인 요양보호사의 인력운영 현황과 개선방안: 요양보호사와 시설장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27(3), 145-181.
- 정은영, 방효중, 문경준, 이광수 (2014). “요양병원 및 장기요양시설의 지역분포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보건연구』, 40(4), 17-28.
- 정지훈 (2016). “요양보호사의 노인에 대한 태도가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 공감능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과 실천』, 2(2), 139-174.
- 조장식, 최승배, 강창완 (2018). 분위회귀모형을 이용한 대졸자 임금 분석. 『한국자료분석학회』, 20(1), 237-246.
- 최윤정 (2022). “단일임금체계에 대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식 연구 - 부산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정책과 실천』, 8(3), 5-44.
- 황덕순, 윤자영, 윤정향 (2012). 『사회서비스 산업 노동시장 분석: 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Becker, G. S. (1994). *Human Capital: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with Special Reference to Education*, Third edition. NBER.
- Binder, M., Krauser, K., Chermak, J., Thacher, J., & Gilroy, J. (2010). Same Work, Different Pay? Evidence from a US Public University, *Feminist Economics*, 16(4): 105-135.
- Heckman, J. J. (1979). Sample Selection bias as a Specification error. *Econometrica*, 47, 153-161.
- Hussein, S. (2017). “We don’t do it for the money”... The scale and reasons of poverty-pay among frontline long-term care workers in England. *Health & Social Care in The Community*, 25(6), 1817-1826.
- Khavjou, O., Suarez, G., Tyler, D., Squillace, M., Dey, J., & Oliveira, I. (2023). *Wages of Direct Care Workers Lower Than Other Entry-Level Jobs in Most States* (Issue Brief). Washington, DC: Office of the Assistant Secretary for Planning and Evaluation,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 Koenker, R., & Bassett, G. (1978). Regression Quantiles. *Econometrica*, 46, 33-50.
- Koenker, R., & Hallock, K. F. (2001). Quantile Regression. *Journal of Economic*

46 사회복지정책과 실천

- Perspectives*, 15(4), 143-156.
- McFadden, D. (1979). *Quantitative methods for analyzing travel behaviour of individuals: Some recent developments*. Behavioural Travel Modelling, 279-318.
- Mincer, J. (1974). *Schooling, Experience, and Earning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OECD (2020). *Who Cares? Attracting and Retaining Care Workers for the Elderly*. OECD Publishing, Paris.
- _____. (2023). *Beyond Applause? Improving Working Conditions in Long-Term Care*. OECD Publishing, Paris.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5).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https://www.longtermcare.or.kr/npbs/e/b/101/npeb101m01.web>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25). 「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2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12.16) 자료.
- 지나영 (2024.05.18.). 같은 요양보호사인데... 불평등한 처우개선비. 「당진신문」. <https://www.idj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204076>
-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시스템(<https://mdis.kostat.go.kr/index.do>).

abstract

Income Determinants of Long-Term Care Workers: A Quantile-Based Approach

Kim, Chan Mi
(Yonsei University/ Ph.D student)

This study aims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through empirical analysis of income determinants across different income quantiles of long-term care workers. With utilizing the 2022 Long-Term Care Survey data provided by the micro data information system(MDIS) of Statistics Korea, this study applied quantile regression models to identify income determinants by income quartile. The analysis results confirmed differences in most variables controlled for in the research model across income quantiles. The findings, derived while controlling for individuals' human capital, showed that the income advantage of care workers among long-term care personnel decreased as income quantiles increased. Regarding long-term care benefit types, home-visit care, home-visit bathing, and home-visit nursing were found to be disadvantageous in terms of income compared to care-giver, with this phenomenon being more pronounced in lower income quantiles. Additionally, work place in agricultural region were found to be more advantageous in terms of income than urban area. The main primary contribution of this study are twofold: First, it confirms that the income of long-term care workers is fragmented, highlighting the need for policy interventions to address these disparities. Second, by examining the income distribution among long-term care workers, the study evaluates the timeliness and alignment of current government policies and draws out important policy implications.

key words: Long-term care-worker, Individual Income, Care-giver,
Long-Term Care Survey data

투고일자: 2025.05.27. 심사일자: 2025.06.07. 게재확정일자: 2025.07.04.